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하천과(안 별표2)
 - 『하천법』 개정(2016.07.20.)으로 국가하천 안에서의 일부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에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했던 사무를 위임사무로 변경 신설함.
 - ⇒ 국가하천 안에서의 일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택시물류과(안 별표2)
 - 『궤도운송법』 개정(2009.04.22.)으로 궤도운송사업에 관한 일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휴지 또는 폐지,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안전관리, 시설개선 명령,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산업과(안 별표3)

- 기 위임된 건설기계 등록업무와 함께 건설기계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건설기계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임규정을 신설함.

⇒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증 발급,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등

○ 건축주택과(안 별표2)

- 『주택법』 개정(2018.03.13.)으로 공사감리비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공사장 관리감독 기관인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공사감리비 예치

나. 위임사무 삭제

○ 산단진흥과(안 별표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06.04. 01.)으로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기존 북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함.

⇒ 검단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 농산유통과(안 별표2)

- 『약사법』 (2011.06.07.)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2013.01 04.)으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 권한이 시·도사무에서 구·군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

○ 일자리노동정책과(안 별표2)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6.12.29.)으로 지방고용심의회에 구·군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2006.12.30.)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등 시·도사무 일부가 구·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이 폐지(2012.06.05.)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지방고용심의회 지역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신고의 수리 등, 산업체 근무 근로청소년의 취학 권장 규정

○ 물에너지산업과(안 별표2)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2014.12.30.)으로 ‘계량기에 관한 개선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보건건강과(안 별표2·별표4)

<근거법령 삭제>

- 『전염병예방법』 (2009.12.29.), 『약사법 시행규칙』 (2013.0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5.05.18.)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제3군전염병예방 진료비의 징수, 마약의 도·소매보고, 조제실제제에 관한 면허증 등의 재발급, 마약류 도·소매업자 등에 대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구·군 등 사무이양>

- 『약사법』 개정(2011.06.07.), 『의료법』 개정(2012.02.01.)으로 관련 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의 수리 등, 한약업사에 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등,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권한 등,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등

○ 청소년과(안 별표2)

- 『청소년기본법』 개정(2004.02.09.)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2004.02.09.)으로 관련 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허가 등

○ 환경정책과(안 별표2, 안 별표4)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2015.12.22.)으로 관련 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 공원녹지과(안 별표2, 안 별표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11.29.)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국가사무(산림청)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자연공원법』 (2008.12.31.) 개정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되어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 자연공원에 관한 권한 중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계획정책관(안 별표2)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정(2003.10.10.)으로 구·군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협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건설산업과(안 별표2)

- 도로법 개정(2010.03.22.)으로 시·도사무에서 국가사무(지방국토관리청)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 토지정보과(안 별표4)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06.04.)에 따라 관련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지적관리를 위한 도면의 재작성 승인

다. 근거법규 및 자구수정

○ 제명수정(안 별표2, 안 별표4)

-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규 제명 수정
- 경제정책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업체 실태조사』 사무 등 8개 부서 13건

○ 근거법령 등 수정(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4)

-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규 수정
- 민생경제과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사무 등 14개 부서 72건

○ 자구수정(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4)

-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위임사무 명칭 등 자구수정
- 물에너지산업과 『계량기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사무 등
11개 부서 32건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 ▶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의 위임, 사무권한의 이양,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조항 변경, 인용 법령 등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의 삭제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사무위임” 이란 「정부조직법」 과 「지방자치법」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개정내역 총괄

위 임 대 상	합 계	위임신설	위임삭제	제명변경	근거법규정 수	자구수정
총 계	199	11	71	13	72	32
구청장·군수 (별표 2)	148	10	52	9	50	27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장 (별표 3)	8	1	1	0	3	3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별표 4)	43	0	18	4	19	2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임사무 신설은

상위 법률 개정 등으로 신설된 사무 중 구청장·군수 등에게 기 위임된 사무와 연계하여 추가로 위임하는 4개 사무 11건으로, 하천과의 「국가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 등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서명	건수	위 임 사 무	위 임 사 유
하 천 과	2	국가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법 개정으로 위임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군에 위임함
택 물 시 류 과	7	계도사업자의 지위승계, 계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계도운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군에 위임함
건 설 산 업 과	1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증 발급 등 건설기계 검사 업무 위임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위임하여 기위임된 건설기계 등록업무와 같이 처리하도록 함 (업무 일원화)
건 주 축 택 과	1	공사감리비 예치 사무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사감리비 예치 업무를 현장관리 감독기관인 구군에 위임함

▶ 위임사무 삭제는

상위 법률 개정으로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이양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경우와 근거 법령(조항) 삭제 등의 사유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22개 사무 71건으로,

- 이양 사무는 농산유통과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9개 사무 56건이고,
 - 환원 사무는 공원녹지과의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 2개 사무 2건이며,
 - 사무위임 삭제는 토지정보과 「지적관리를 위한 도면의 재작성 승인」 등 11개 사무 13건으로,
- 각각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서명	건수	위 임 사 무	삭 제 사 유
산 단 진 흥 과	1	검단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사무를 위탁함에 따라 기존 복구청장에 위임한 사무 삭제
농 산 유통 과	5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권한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사무권한 변경
일 자 리 노 동 정 책 과	13	지방고용심의회 지역별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권한	지방고용심의회에 구군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신고의 수리 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수리 등 업무를 구.군에서 처리하도록 변경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취학권장	근거법령(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폐지
물 에 너 지 산 업 과	1	계량기에 관한 개선명령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위임사무 폐지

부서명	건수	위 임 사 무	삭 제 사 유
보 건 과 건 강 과	36	제3군전염병예방 진료비의 징수	‘격리치료에 드는 경비 중 개인 부담’폐지
		마약의 도소매보고	‘마약류 통합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
		마약류 도소매업자 등에 대한 마약 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조제실제제에 관한 면허증 등의 재발급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임사무 폐지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의 수리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사무권한 변경
		한약업사에 관한 허가 및 변경허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권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허가 등 권한	
청소년과	7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허가 등	
환 경 과 정 책 과	2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공 원 과 녹 지 과	2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	위임사무 권한이 시도사무에서 국가사무(산림청)로 변경
		자연공원에 관한 권한 중 공원보호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관리	‘공원보호구역제도’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도시계획 정 책 과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협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구군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사무 삭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 계획의 입안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건 설 과 산 업 과	1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임사무 권한이 시도사무에서 국가사무(지방국토관리청)로 변경
토 지 과 정 보 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도면의 재작성 승인	지적공부 전산화로 승인업무 삭제

▶ 위임사무 수정은

- 상위 법률 개정으로 법 제명 및 근거 법령(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의 위임사항을 수정하는 35개 사무 117건으로,
- 제명 수정은 경제정책관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업체 실태조사」 등 8개 사무 13건이고,
 - 근거 법령(조항) 수정은 민생경제과의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 14개 사무 72건이며,
 - 자구 수정은 물에너지산업과 「계량기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등 11개 사무 32건임.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급변하는 사회·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령 제·개정으로 매년 위임 사무의 신설·폐지와 근거 법령(조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정비되지 않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일제 정비를 거친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가 직제 순으로 편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임.
- ▶ 또한, 사무위임 제도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를 위한 측면도 있는 만큼, 총괄 및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령의 제·개정과 연계한 변경 사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